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시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불투명도 기준 등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광로 시설관리기준에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의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10의2 제3호나목4)카) 신설)

1) 현행 시설관리기준에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할 때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므로, 해당 공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 배출 시 적정 저감 조치, 불투명도 기준 준수를 통해 오염물질 관리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마)에도 불구하고 용광로 보수를 위해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
기로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 (1) 다음 달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보수 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 계획 등을 이번 달 말일
까지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2)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안전밸브 개방 시간은 맨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이후로 계획하되, 안전 또는 공
정관리를 위하여 일출 이후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는 환
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 (3)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는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
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긴급 수리, 돌
발적인 사고,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청장
이 인정한 경우는 이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4)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카메라 등 촬영매체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5) 안전밸브 개방 배출 종료 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안전밸브 개방일시·폐쇄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3)의 단서에 따른 저감조치 등 적용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별표 10의2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호나목4)카)(3)의 시설관리기준 중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